

# 기타수당 지급내규

제정 2020. 2. 24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교외연구과제에서 지급하는 기타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교외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본 내규를 따른다.  
단,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지침을 준수한다.

## 제3조(전문가 활용비 및 회의수당)

① 국내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직급 및 경력사항	강사료 (시간)	자문료 및 회의수당 (시간)
책임급	- 소속기관의 교수, 기관(부서)장 - 박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- 석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- 위와 상응하는 경력	300,000원 이내	200,000원 이내
선임급	- 책임급 이외	200,000원 이내	150,000원 이내

② 해외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강사료(회)	자문료	
		단기(일)	장기(월)
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석학	\$1,500 이내	\$700 이내	\$20,000 이내
교수급 이하	\$1,000 이내	\$400 이내	\$11,000 이내

③ 특별 처우가 필요한 석학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면 초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전문가 활용을 위한 체재비는 식대와 일비를 제외하고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⑤ 상기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 이외에 해당하는 인건비성 경비 지급 시 임금은 정부고시 시간당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.

#### 제4조(번역료 및 통역료 등)

① 번역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단가	비고
한국어 → 외국어	50,000 이내	A4용지 1장(25행) 기준
외국어 → 한국어	30,000 이내	

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단가	비고
국문(자료, 일반) 원고	30,000 이내	A4용지 1장(25행) 기준
외국어 원고	50,000 이내	

③ 통역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단가	비고
수행 통역	300,000 이내	1인당 1일 기준 3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100,000원
국제회의 통역	300,000 이내	

④ 속기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단가	비고
속기기본료	300,000 이내	1급 속기사 1시간 기준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고시요금 기준  · 준용한 기관의 고시요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기준에 따름
녹음재생	350,000 이내	
전문분야	350,000 이내	
외국어속기	400,000 이내	
요점속기	200,000 이내	

제5조(기타사항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(2020. 2. 24)

본 제정 내규는 2020.3.1.부터 시행한다.